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나216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나2167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1273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티스

담당변호사 안병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문기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8. 3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12736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019.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 판사 박이규